

부산광역시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8-----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 12. 18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 12. 24)

### 2. 제안설명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 가. 제안이유

시군구 정보화 사업에 따라 한시 증원된 전산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한시 증원된 전산8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로 함  
(조례 제500호 부칙 제2조)

### 3.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9조(한시증원)

- 부산광역시사하구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한시증원)
-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증원 기한연장 승인 [기획 12200-21888(2002. 12. 13)]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인력(1명)의 존속기한을 2002. 12. 31에서 2004. 6. 30 까지로 1년 6개월 연장 승인되었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